

(의안번호 제1299호)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2. 3. 18.(金)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의안번호 제1299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2. 2. 9.

나. 발 의 자 : 경상남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2. 11.

2. 제안이유

도내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도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안 제1조)

나.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 노선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둠
(안 제1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
조까지)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20조)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둠
(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합 의 : 법무담당관

다.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21. 12. 23. ~ 2022. 1. 12.(21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2) 소요예산 : 붙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가) 근 거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나) 사 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
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의견 없음
- 4)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원안 동의
- 5)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예산담당관) : 해당 없음
-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일자리경제과) : 의견 없음
- 7)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과) :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내용

가. 개정 필요성

- 시·군 경계지역 도민의 생활권과 버스노선 불일치로 인한 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노선 변경 등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관계 시·군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그러나, 시·군 경계를 넘는 버스노선의 변경은 기존 운수업체의 승객 감소 등 이해관계 충돌로 관계 시·군간 협의가 어렵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어려움이 상존함
- 본 조례 개정은 도내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부산일보) 〉

○ 함안군, 마산까지 버스 운행은 부당(부산일보, 2009.6.17.)

- 경남 마산시와 함안군이 갈등을 빚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함안군이 마산시와 협의도 없이 농어촌버스를 마산까지 연장운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17일 마산·창원지역 8개 시내버스업체 대표들이 함안군수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함안군이 마산시와 미리 협의하지 않은 버스 연장운행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 예시 〉

- A시 (가)마을(생활권역은 B시)의 시내·농어촌버스를 B시까지 노선연장 허가할 경우
 - (현행) 노선연장 협의 요청(A시→B시) ⇨ B시 미동의할 경우, 노선연장 허가 불가
 - (개선) B시 미동의시 ⇨ 조정신청(A시→도) ⇨ 도 조정위원회의 심의 ⇨ (가결 통보시)노선 연장 허가[A시→운수업체]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안 제 제3조 앞에 “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안 제 제13조 앞에 “제3장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하였고,
- 안 제1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 ~ 제18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 구성, 임기, 해촉 사유, 심의 제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9조 ~ 제2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의 소집,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이해 관계자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지사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 2. 11. 의안 회부되었음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안 제 제3조 앞에 “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안 제 제13조 앞에 “제3장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
 - 현행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4. 7. 8. 최초 제정되어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금회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려는 개정으로 ‘장(章)’을 삽입하여 기존 조례의 조문내용과 추가되는 조문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조문의 체계적인 구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

-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에는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및 사업자의 선정,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운행노선의 선정, 보유차고의 면적 기준, 운임의 신고, 협의·조정, 운전자 교육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는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소집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신 설>	제3장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구분(章)	조문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2조	- 목적 - 정의
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	안 제3조~제12조	- 한정면허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 사후관리
제3장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3조~제23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 운영 · 회의개최, 정족수, 서면심의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8조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29조²⁾에 따른도 조정위원회(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도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 변경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도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 1)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제29조(시·도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운송사업 인·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시·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노선신설·폐지 등으로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경우
 2.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
 3. 2개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시장·군수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안 제13조**는 현행 조례 제13조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음
 -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노선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 기존 제13조(준용규정)은 **준용 규정이 없어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법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준용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 내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노선 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안 제14조(기능)**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 △도내 2개 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제2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노선 신설·폐지 등으로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경우(제1호),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굴곡도³⁾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제2호), △2개 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가 협의를 되지 않는 경우(제3호) 제27조를 준용하여 시·도 조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었음
- 다만, 제2호의 경우 광역급행형 버스는 현재 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없고, 업무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할 사무이며, 직행좌석형 버스의 경우 양산, 거제 등에서 운행을 하고 있으나, 경남에서는 다른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시군에서 사업계획 인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서는 제외하였음

3) 제2조(용어의 정의) 10. "굴곡도"라 함은 기점과 종점 간 최적운행거리 대비 운행계통 상 실제운행거리와의 비율(실제운행거리 / 최적운행거리)을 의미한다.

〈 국토부 훈령 및 조례안 비교(안 제14조 관련) 〉

- [국토부 훈령] 제29조(시·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노선 버스운송사업 인·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시·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1. 노선신설·폐지 등으로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경우
 - 2.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
 - 3. 2개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시장·군수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조례안]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 1. 도내 2개 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 2.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
 - 3.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15조(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 국장으로 정할 것과, 위촉직 위원을 △교통업무 관련 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통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통, 소비자 보호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음

〈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

구 성	회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교통업무 담당국장(당연직)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주재 : 교통업무 담당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능 : 노선 관련 등 심의 및 자문 ■ 위 원 : 15명 이내(당연직+위촉직) ■ 당연직 : 교통업무 담당국장(1명) ■ 위촉직 :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표 등(14명)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해 축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척 :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의견청취 :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서면심의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안 제16조(위원의 임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것 등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7조(위원의 해촉)**은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망·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이 변동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되며, 또한 안건의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위원회 소속위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안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및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9조(위원장의 직무) ~ 제23조(운영세칙)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간사 및 서기,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음
 - 위원회 회의는 안 제20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필요시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함

〈 노선조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안) 〉

○ 시·군간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안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간 노선조정 안건 심의상정 요청 - (사전절차) 시·군에 걸치는 사업계획변경 신청, 관계 시·군간 협의
↓	
안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사전 검토 · 관계 행정기관간 회의 개최
↓	
위원회 상정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심의 - 관계자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필요시) - 인용·수정·기각 · 심의결과 건의(위원장→도지사)
↓	
조정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도지사→관계 행정기관) - 심의를 요청한 행정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았을 경우, 신속히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함
↓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변경 인가(심의요청 행정기관→운송사업자) · 운행개시

○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 등

항 목	내 용
안건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 등 안건 심의상정 요청
↓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심의(자문) - 관계자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필요시) · 심의(자문)결과 건의(위원장→도지사)
↓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외버스 신규면허 인가 등

□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노선 변경 등 운송사업계획 변경 시 관계 시·군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 운수업체의 승객 감소 등 이해관계 충돌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시·군 경계지역 주민들의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군간 버스 노선 조정**을 추진하고자 법 제78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제29조에 따른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현행 조례상**에 ‘위원회’ 관련 사항을 추가한 것임
- 한편, 위원회는 조례안 제14조에 따라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의 조정, 시외버스 신규면허, 그리고 시외 버스 노선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 **특별·광역시**의 경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시내버스는 관할관청이 특별시·광역시·시장 등으로 대전시를 제외하고 모든 광역시에서

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광역도의 경우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관할관청이 각 시·군이므로 도의 직접적인 노선조정이 불가하며, 경기, 강원, 경북에서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나머지 광역도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업무를 미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도별 위원회 운영 현황 붙임 참조)

- 시·군 경계지역의 노선버스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조치로 판단되며,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붙임 1. 시·도별 위원회 운영 현황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련법령 1부
4.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시·도별 위원회 운영 현황

구분	제정일자	조례명(위원회명)	구성
서울	'98. 3. 10.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 총원: 50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행정1부시장(위원장) · 위촉직: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직능 대표, 시의원, 유관기관 대표, 운송사업관련 대표, 관계 공무원
부산	'06. 8. 2.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총원: 25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행정부시장(위원장), 기조실장, 교통국장, 부산지방경찰청교통과장 · 위촉직: 교통분야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시의회 추천, 시민단체 추천, 부산교통공사 등 임원, 운송사업관련 대표,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대구	'99. 4. 16.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총원: 20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행정부시장(위원장), 교통업무 담당국장 · 위촉직: 교통전문가, 공인 관련단체 대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시의회 추천, 교통유관기관 추천, 운송사업관련 대표
인천	'01. 5. 21.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버스정책위원회)	· 총원: 30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행정부시장(위원장),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시의원,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직능 대표, 시민단체 대표, 운송사업관련 대표
광주	'06. 1. 31.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 총원: 20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행정부시장(위원장) · 위촉직: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직능 대표, 시의원, 관계 공무원, 그밖에 필요하고 인정
울산	'07. 4. 5.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조례	· 총원: 40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경제부시장(위원장), 교통건설국장(부위원장) · 위촉직: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직능 대표, 시의원, 운송사업관련 대표, 관계 공무원, 그밖에 필요하고 인정
경기	'04. 11. 1.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	· 총원: 40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행정2부시장(위원장), 교통국장 · 위촉직: 경찰청 교통과장, 도의원, 시군 교통부서 과장, 교통연수원장, 교통전문가, 직능 대표, 운송사업관련 대표, 도민 서비스 평가단 대표, 그밖에 필요하고 인정
강원	'11. 4. 22.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교통정책심의위원회)	· 총원: 15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업무담당국장(위원장) · 위촉직: 경찰청 교통과장,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직능 대표, 운송사업관련 대표, 그밖에 필요하고 인정
경북	'00. 11. 20.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총원: 25명(위원장1, 부위원장1) · 당연직: 경제부시장(위원장), 교통업무담당국장(부위원장) · 위촉직: 관계 공무원, 도의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직능 대표, 운송사업관련 대표, 기타

[붙임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버스노선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버스노선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미첨부 제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석 욱 희

관 련 법 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협의·조정 등) ①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일반형 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한정면허)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영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 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 삭제

② 관할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대상 노선 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 나. 운행대수
 - 다. 서비스의 수준
 - 라. 면허기간
 - 마. 보조금의 지급
 -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 다. 서비스의 수준
- 라. 면허기간
-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바. 보조금의 지급
-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 삭제 <2014. 12. 31.>
- 4. 삭제 <2014. 12. 31.>
- 5. 삭제 <2014. 12. 31.>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서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도에 걸치는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 ⑥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

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조정기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닐 것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종 신청한 시·도의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운행시간에 관한 조정은 1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7조(조정위원회 구성·운영등) ① 규칙 제98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대중교통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교통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시내 또는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조정위원회 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위원장은 당해 관련 시·도의 교통행정담당과장과 당해사업의 당사자·당해지역의 주민대표·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기준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로 기각 또는 인용조정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건의한다.

1. 기각조정의 원칙

가.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조정신청

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정신청

다. 노선연고권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

라. 운송사업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조정신청

마. 굴곡도 악화로 버스 운행효율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정신청

2. 인용조정의 원칙

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정

나. 지역간 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

다. 원활한 운행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관련업체의 경영상태등 현실여건과 교통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조정을 하거나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9조(시·도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운송사업인·면허 및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시·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노선신설·폐지 등으로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경우

2.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경우 굴곡도가 악화되는 사업계획변경

3. 2개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노선에 대하여 관련시장·군수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붙임4]

의안번호	제1299호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의결사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경상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2. 2. 9.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9호
------	--------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경상남도지사

1. 제안이유

도내 시·군간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도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목적을 변경 (안 제1조)

나.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 노선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20조)
-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
(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합 의 : 법무담당관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21. 12. 23. ~ '22. 1. 12.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의견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과) : 해당 없음
 - 5)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예산담당관) : 해당 없음
 - 6)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일자리경제과) : 의견 없음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도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을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 내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노선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

에 응한다.

1. 도내 2개 이상의 시·군간에 걸친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
3.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교통업무 관련 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교통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 보호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

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자문·심의를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20조제2항의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도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2장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등록</p>
<p><신 설></p> <p>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장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p> <p>제13조(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설치) 경상남도 내 시내·농어촌 버스 및 시외버스 등의 노선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신 설></p>	<p>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p> <p>1. 도내 2개 이상의 시·군간에</p>

<신 설>

결친 시내·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하여 관련 시장·군수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시외버스 신규면허에 관한 사항

3. 주민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시외버스 노선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교통업무 관련 시·군 및 관

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교통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 보호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 대표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신 설>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 of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
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으로 자문·심의를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20조제2항
의 재적위원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신 설>

<신 설>

<신 설>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신 설>

주무관이 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
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
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
회에 참석하게 하는 때에는 회
의개최일 3일전까지 참석통지
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
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